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2조제6호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8조 각 호에 명시된 숫자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 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보완함(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나. 안 제2조제6호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8조 각 호의 명시된 숫자를 삭제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다. 인용하는 조문을 명시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6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호 중 “12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8개”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백제왕도가 소재한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으로 <u>발전시키</u>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 ----- ----- ----- <u>발전시키</u>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보존·관리”란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연구, 복원 등의 행위를 <u>포함한다</u> .	제2조(정의) ----- -----. 1. ~ 2. (원안과 같음) 3. ----- ----- ----- ---- <u>말한다</u> .
제8조(보존·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6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8조(보존·관리사업) ----- ----- ----- ----- -----. 1. ----- ----- <u>등</u> ----- -----

2.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12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8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2. -----
----- 등 -----

3. -----

등 -----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② <u>제1항에 따른</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0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박수현·조인철·양부남
이개호·서삼석·임오경
한정애·김영배·김준혁
윤종오·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

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보존·관리사업, 연구 및 학술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이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2개 도 및 3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보완함(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나. 안 제2조제6호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8조 각호의 명시된 숫자를 삭제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

다. 인용하는 조문을 명시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백제왕도가 소재한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왕도”란 백제 시대의 수도(首都) 지역으로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백제왕도 핵심유적”이란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3. “보존·관리”란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연구, 복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 및 추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4.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존·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2.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